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고찰과 개선

황규영*

<요 약>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두 가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분리과세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세법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세법규정은 종합과세하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적 분리과세 금액의 계산 시에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합과세하는 일부 항목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다른 항목은 영향을 주지 않는 논리적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뿐만 아니라 종합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도 제외한 남은 항목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을 수행하도록 세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세법규정에 따른 경우 퇴직 후 얻게 되는 소득 중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종합과세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복잡한 연결구조와 불명확한 문장구성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의 경우도 앞에서 제시한 세법개정방식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분리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권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hwanggy@kookmin.ac.kr

I. 서 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세법에 열거된 해당소득을 벌어들였을 때에 이를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한 소득의 경우 조세 정책적 목적이나 세원관리의 간결성 확보, 조세 부담의 경감 등을 이유로 분리과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담겨있다. 그중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내용은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귀속자의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칭함).

그런데 현재의 기타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규정이 복잡한 조문체제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와는 달리 확정적인 분리과세가 아니고 선택적인 분리과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과 조건 없이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경우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는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는 항목과 조건 없이 종합과세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하여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는 세법조문은 이러한 일관된 논리에 따라서 보다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기준금액에 대한 연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하여 연구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조건부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거나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한 논리적 검토의 필요성이 간과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관련 조문의 복잡성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논리적인 흠결을 발견해 내고 그 정합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II. 선행연구와 기타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법규정

1. 선행연구

기타소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김남욱(2015)은 서화·골동품의 과세를 합리화하고 양성화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포함시켜 과세하고 작가 본인에 의한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승영(2016)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최초 1회성 보상금액만으로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을 확대하여 연관된 보상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수성·윤성만(2012)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발생하는 정규교원의 수업료 수입이 현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규정 하에서는 학교가 정규교원보다는 외부강사를 방과후학교의 강사로 선호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교원의 근로소득 증가분이 연금법상 법인부담금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윤종철·손혁(2017)은 인적용역 소득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득구분을 판단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소득귀속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귀속자가 필요경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을 선호하게 되어 소득구분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분리과세 여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규정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홍정화·주찬식 2006)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오윤·임동원 2013)가 있었고,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한 세법개정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기은선·황문호 2014)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 중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류의 정당성을 다루는 것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는 관심의 대상에서 떨어져 있었다. 분리과세의 정당성이나 분리과세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타소득의 분리과세가 확정적 분리과세가 아니고 선택권이 부여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영향이 크기 않아서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된 결과로 판단된다.

2. 과세규정 등의 개정연혁

현행 규정상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려면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판단하는 주된 내용은 위 조문에서 ‘가’목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구체적 항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규정을 토대로 여러 기타소득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①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는 항목, ② 조건 없이 종합과세하는 항목, ③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표 1>의 ‘성격’구분에서 ‘분리과세’로 표기한 것이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는 항목이며, ‘종합과세’로 표기한 것이 조건 없이 종합과세하는 항목이다.

이렇듯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과 조건 없이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의 결정은 명확하다. 그런데 선택적 분리과세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¹⁾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Ⅲ장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 <표 1>과 <표 2>에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저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처럼 구분한 것은 이어지는 논의과정에서 항목 구분의 혼란을 방지하고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다.

〈표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항목 중 분리과세 대상 여부의 구분(현행)

구 분	항 목			성 격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법21조 제1항	1호 ↳ 20호 22호 26호	아래의 ①과 ②를 제외한 항목	분리과세
			① 2호 항목 중 복권당첨금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다음의 것 승마·승자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	
선택적 분리과세 제외대상	법21조 제1항	21호	연금외수령한 연금계좌 인출액	분리과세
		25호	서화·골동품의 양도	
		23호	뇌물	
		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종합과세
		10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의 경우	
		22-2호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위 <표 1>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이 개정되어 온 연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현재와 같이 틀을 잡은 것은 2009년 말 세법개정에서였다. 2009년 말 개정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항목 중 분리과세 대상 여부의 구분(2009년 말)

구 분	항 목			성 격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법21조 제1항	1호 ↳ 22호	아래의 ①과 ②를 제외한 항목	분리과세
			① 분리과세 연금소득(법 제14조 제3항 제9호) ②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소득(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금, 승마·승자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선택적 분리과세 제외대상	법21조 제1항	25호	서화·골동품의 양도	종합과세
		23호	뇌물	
		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10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의 경우	

2009년 말에 마련된 세법규정에서 현재의 세법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바뀐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22-2호(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와 26호(종교인 소득)의 신설이다. 21호(연금외수령한 연금계좌 인출액)의 경우도 개정이 있었지만 종전의 ‘분리과세 연금소득’(2009년 말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을 연금소득세 개편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것이므로 분리과세라는 과세논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III. 현행규정의 문제점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행규정이 가지는 문제점은 2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문제는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문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2-2호에 규정된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종합과세 할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하 이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분리과세 판단 기준금액의 적용에 대한 문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의 가목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과 관련한 핵심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조문의 문장 중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항목이 달라지게 된다. 위 조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2가지 의견이 대립되어 나타난다. 첫 번째 의견은 ‘300만원 이하이면서...’의 내용이 그 앞의 문장에 연결된 것으로 보고 ‘제127조에 따라...’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두 번째 의견은 ‘300만원 이하’라는 것과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즉, 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②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분리과세의 선택권이 부여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가. 원천징수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보는 견해

원천징수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와 제22호, 그리고 제26호에 따른 항목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는지를 먼저 계산하고(이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규정된 항목들은 제외하고 계산함) 그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면 이 중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항목(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분리과세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할 경우 <표 1>에서 ‘종합과세’로 성격 분류가 된 소득들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3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합산하나 최종적으로 분리과세 선택권이 부여되는 소득에서는 제외된다. ‘300만원 이하’를 판단하는 대상이 ‘제1호부터 제20호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0호에 규정된 이 항목을 포함하여 300만원 이하 여부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항목은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분리과세 선택권이 부여되는 소득에서는 제외하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례를 가정하고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한다.

<사 례>

다음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① 유실물 습득에 따른 보상금 2,000,000원을 수령함
- ② 기계장치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500,000원을 수령한 후 매수자의 해약에 따라서 동 금액을 위약금으로 대체함
- ③ 알선수재로 수령한 금품 10,000,000원이 있음

원천징수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경우 위 사례에서 ①과 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위 ③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항목이므로 합계할 대상이 아님). 따라서 ①과 ②와 ③ 모두를 종합과세하게 된다.²⁾

이 견해에 따른 경우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이 있더라도 그 중 일부소득만이 분리과세 선택권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위 사례의 ②와 ③이 모두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이지만 이 중에서 ②번 항목(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금액)만이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그 액수가 클 경우 다른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만 ‘알선수재로 수령한 소득’과 같은 불법 소득은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

2) 시중에 출판된 세법의 교재 중에서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저술된 경우는 ‘세법강의(이철재 외 2018, 914)’와 ‘세법엔딩 Vol 2(원재훈 외 2018, 89)’ 등이 있다.

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함이 된다. 2009년 말 마련한 분리과세 규정인 <표 2>에 따르면 불법소득(제23호와 제24호)의 크기는 분리과세 선택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그 금액이 클 경우 다른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권을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분리과세 선택권을 제한하는 항목이 된다면 그 항목이 제재를 받을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위 사례에서 제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금액’이 아니라 반대로 불법소득이 되어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나. 원천징수를 동시충족 조건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의미를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는 조건과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할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항목(이것에 해당되면 조건 없이 종합과세하게 된다)은 동시 충족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를 경우 분리과세 선택의 기준금액인 ‘300만원 이하’의 계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항목들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표 1>에서 ‘종합과세’로 성격 분류가 된 소득들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소득 항목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가 되는 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위 ‘가’에서 제시된 사례에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례의 ②와 ③은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사례의 ①번 금액만으로 ‘300만원 이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그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유실물 습득에 따른 보상금인 200만원은 분리과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³⁾

이렇게 하면 <표 2>에서 종합과세로 성격 분류된 항목과 분리과세로 성격 분류된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항목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세법의 적용이 간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이 역차별적으로 취급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이러한 견해로 저술된 책으로는 ‘개인과 세무회계(황규영 2017, 146)’이 있다.

2.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종합과세 여부의 문제

가.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연역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에 관하여 2016년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만이 있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에 비취볼 때 형평성을 잃은 상태였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시점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의 경우 그 행사시점이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시점이면 근로소득이 되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근로관계가 해제된 시점(퇴직 후 시점)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이에 반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2016년까지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이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시점이든지 아니든지 모두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도 퇴직 후에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개정이 2016년 12월 20에 있게 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2호).

나.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종합과세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세법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치가 2016년 말에 있었다. 문제는 이 항목을 신설하는 조문의 위치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설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과의 과세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조문의 위치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위치인 소득세법 제21조 제22호의 다음에 두었다(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제22-2호로 신설함).

그런데 선택적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문구는 기존대로 “...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 ...”으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제22-2호로 신설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항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현행 세법규정의 문맥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얻은 이익(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항상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된다.⁴⁾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 직무발명보상금이 주식매수선택권보다 세제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

4) 연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제22-2호로 신설하는 이유를 알아봤으나 이 항목을 이 위치에 신설하는 이유가 이를 종합과세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를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세법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세분화하여 그 행사시기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진보를 이루었으나 그 소득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판단과 관련해서는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가 입법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은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세법조문이 실타래처럼 여러 단계로 얽혀져 있어서 그 규정의 취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문의 문구도 불분명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IV. 기타소득 분리과세 규정의 개선방안

1. 분리과세 판단금액의 적용과 관련한 개선

가. 혼란의 이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의 조건에 대한 혼란은 그 문구의 형식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규정한 문구(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와 유사하다는 것으로부터 연유하는 것 같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문구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소액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내용인 “...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과 병행을 이룬다.

한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구분되는 소액금융소득(2천만원 이하 여부)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조건을 규정한 상기 제6호의 내용을 동시충족조건으로 이해할지 아니면 추가조건으로 이해할지에 대한 문제가 기타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내포되어 있었다(제Ⅲ장의 “1”에서 논의된 내용 참조). 그런데 금융소득의 경우 상기 제6호의 내용을 추가조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구의 해석을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게 되면 앞서 제Ⅲ장의 “1”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천징수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보는 견해’가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불법소득을 다른 소득보다 우대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낸다.

나. 판단

우리는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취지와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는 그 소득자가 ‘소액금융소득자’인가의 여부가 핵심 고려요소가 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소득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상의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소액금융소득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한편,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소액 소득자인지 고액 소득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일 이러한 판단 기준이 세법규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불법소득(뇌물,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얻는 이익)을 포함하여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계산하도록 했어야 옳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불법소득은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경우에 적용할 논리는 금융소득에 적용할 논리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타소득 자체 내에서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확정적 분리과세가 아니고 선택권이 부여되는 분리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취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입장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와 관련된 국세청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3〉 소득세 집행기준 14-0-1 【분리과세 소득의 범위】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 연금계좌에서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실적의 연금외수령 소득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음
	연금계좌에서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실적의 연금외수령 소득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이와 유사한 소득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

<표 3>을 보면 분리과세 선택권이 적용되는 기타소득(표의 첫 번째 칸에 규정됨)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소득금액이 300

만원이하'라는 조건과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그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라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는 이어지는 설명 문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로 표시된 두 번째 설명 문구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설명문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 문구에 포함된 항목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불법소득인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 집행기준 14-0-1에서 말하는 바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따라서 종합과세로 규정된 항목)은 모두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 시에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제Ⅲ장에서 살펴본 “나. 원천징수를 동시 충족 조건으로 보는 견해”와 동일한 것이다.

다.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와 그 입법적 취지가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문구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는 조건과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조건을 동시충족 조건으로 보아서 이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현행 조문을 개선할 경우의 대안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분리과세 기타소득 관련 조문의 개선방안

현 행	개선안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는 다음의 소득(이하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함) 1)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2)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3)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4)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표 4〉 분리과세 기타소득 관련 조문의 개선방안 (계속)

현 행	개선안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나. 가목의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제127조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를 “종합과세 기타소득”이라 함)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함)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표 4〉의 개선방안이 가지는 장점은 기존의 조문이 따르고 있는 미로형 항목 연결방식을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규정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기타소득의 분리과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종합과세 기타소득’이 확정되고 나서 이들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선택적 분리과세가 주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명확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은 추후 다른 기타소득 항목이 신설되거나 분리과세의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개정 조문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여 개정의 취지가 혼선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종합과세 문제 개선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 선택적 분리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문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가목의 문구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2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추가되는 과정은 앞서 제Ⅲ장의 “2”에서 살펴보았듯이 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과의 과세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이 항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규정한 제22호의 옆인 제22-2호에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신설항목은 종전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였던 것이다.

현행 조문 상의 이러한 적용, 즉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종합과세가 원래의 입

법 취지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⁵⁾ 그러므로 현재의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이 항목이 과연 종합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논리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제Ⅲ장의 “2”에서 분석한 대로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보다 세제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⁶⁾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의도되지 않은 원인으로 말미암았다고 본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 퇴직 후 얻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간에 과세상의 차이 때문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을 달리했다 라기 보다는 현행 조문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로 조문을 신설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행 세법규정 특히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체계는 복잡하다. 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문을 미로처럼 따라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퇴직 후 얻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의견이며,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따를 경우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아니고 ‘종합과세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연히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되게 된다.

V.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의 세법규정은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해석상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는 조건과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조건을 동시 충족 조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후자를 보충적 조건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후자의 조건을 보충적 조건으로 보게 되면 종합과세로 규정된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만이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자를 보충적인 조건으로 보는 견해는 이 조문의 내용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에 대한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선택권이 주어

5)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담당관과 통화를 하였으나 현재로는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과세하기 위하여 제22-2호에 위치시켰는지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개정 시에 이를 담당하였던 담당관은 현재 다른 담당관으로 교체된 상태임).

6) 현행 세법 규정대로라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전자는 분리과세 선택권을 박탈당한 상태가 되어서 세제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

지는 분리과세라는 점과 기타소득이 일시적·우발적 속성의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분리과세의 판단은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논리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현행 세법규정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분리과세의 구분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과세로 규정하는 반면 퇴직 후 얻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선택적 분리과세로 규정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한 취지를 간명하게 적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무조건적 분리과세 항목과 종합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난 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연구 분야인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현행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선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여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였다. 정부의 알기 쉬운 세제로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은 아직도 그 복잡성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본의 아니게 납세자의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고 과세논리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참고문헌

- 기은선 · 황문호. 201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1권 제3호 : 213-242.
- 김남욱. 2015. “조세정의를 위한 서화 · 골동품의 합리적 과세방안”.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 195-222.
- 김수성 · 윤성만. 2012. “방과후학교 수업료 수입의 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 157-189.
- 오 윤 · 임동원. 2013.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 63-92.
- 윤종철 · 손 혁. 2017.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비교한 기타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 33-58.
- 정승영. 2016.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2집 제2호 : 131-181.
- 홍정화 · 주찬식. 2006.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업특성별 영향 분석”. 세무학연구 제23권 제2호 : 37-56.
- 원재훈 · 선형식 · 김현식. 2018. 『세법엔딩 Vol 2』. 도서출판 탐진.
- 이철재 · 정우승 · 유은중. 2018. 『세법강의』. 세경사.
- 황규영. 2017. 『개인과 세무회계』. 도서출판 청람.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삼일i 홈페이지(<http://www.samili.com>)

Consideration and Improvement about the Separate Taxation on Other Income

Gyuyoung Hwang^{*}

— <Abstract> —

The regulation about separate taxation on other income was consisted of two parts. The one thing is un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on designated items regardless of their amount. The other is assigning the option about separate taxation to taxpayers if the sum of other income does not exceed three million w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confusions about the 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on other income and to find the improvement proposal on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is analysis, current provision drives some aggregate taxation items into the bunch of 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when calculating the money criterion(three million won). The current regulation has a logical confusion that some aggregate taxation items inflict on 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and the others do not.

Therefore to remedy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coherence of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regulation towards excluding all aggregate taxation items when calculating the money criterion.

And there is one more problem in current regulation that the invention rewards after retirement are taxed aggregately but the gains from stock option after retirement are taxed separately. This shortcoming may results from complicated structure of current regulation and its vague context.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through reforming the tax regulation by the same way.

<Key words> separate taxation, other income, option about separate taxation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wanggy@kookmin.ac.kr